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24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10. 7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도병두 의원

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,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계획 수립(안 제5조)

라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실태조사(안 6조)

마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(안 제7조)

바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2. 10. 11. ~ 2022. 10. 17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2. “약물”이란 알콜, 담배,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·청소년을 위한 조치) 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이 마약 및 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
2.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
3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 사업
4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의 시행)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미취학 아동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사업

2.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3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
4. 초·중·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
5.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사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 구청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

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)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·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8. 17.] [법률 제18443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6. 7.]

[제3조의2에서 이동 <2011. 6. 7.>]